

평화통일교육과 국가보안법

평화통일교육과 국가보안법

2021. 6. 17

평화통일교육과 국가보안법

- 일시 : 2021년 6월 17일(목) 오후 2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주최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국회의원 강민정, 서영석
- 주관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시민연대

평화 통일 교육 과 국가보안법

- 일시: 2021년 6월 17일(목) 오후 2시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주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국회의원 강민정, 서영석
- 후원: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시민연대

평화통일교육과 국가보안법

▶ 제1부 사회 : 이 종 문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사무처장

- 인사말 _ 이 창 복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 종 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강 민 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서 영 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정)
전 희 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제2부 사회 : 박 미 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 6.15남측위원회 교육위원장, 교육학박사

- 발제1 _ 오 은 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장, 교육학 박사
발제2 _ 이 성 주 경기평화교육센터 교육국장
- 토론
 - 토론1 _ 이 연 희 6.15남측위원회 대변인, (사)겨레하나 사무총장
 - 토론2 _ 이 시 종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차장, 통일인문학 박사
 - 토론3 _ 오 민 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 변호사
-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자료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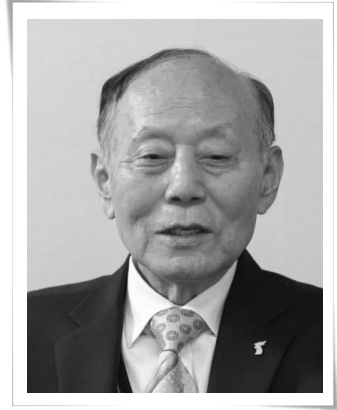
인 사 말

인사말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창복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말할 때 국가보안법은 빠짐없이 거론되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보안법 폐지의 실질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촛불항쟁에 힘입어 정권이 탄생되었고, 국회 과반이 넘는 의석을 점하고서도, 개혁세력을 자임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합니까?

오늘 토론회를 통해 오은정 위원장과 이성주 국장은 학교교육현장과 사회교육 현장에서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떻게 교육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짚어 주셨습니다. 이연희 대변인과 이시종 차장, 오민애 변호사 역시 평화통일교육과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북을 적으로 낙인찍고 정보접근과 관련 자료 발간, 교육 활동, 각종 협력사업을 불법 시 하는 한, 평화통일교육도, 평화통일운동도 활성화될 수 없으며, 남북화해협력과 통일의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다시 한 번 생생하게 짚어준 발제자와 토론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불과 10일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만에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 청원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에 따른 구속, 압수수색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과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던 김호씨, 북 연구자인 4.27시대연구원의 이정훈 연구위원, 북의 자료인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의 김승균 대표, 통일운동가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원진욱 사무처장 등 많은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옹죄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어떻게든 유지시키려는 분단세력들의 몸부림입니다.

이제는 더 지체하지 말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합시다.

온 국민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냅시다.

6.15남측위원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종걸

안녕하십니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종걸입니다.



저는 지난 6월 1일 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된 “국가보안법”토론회에서 냉전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이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반드시 개정이나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남측의 대표적인 통일운동단체인 6.15 공동선언 선언 실천 남측 위원회와 민화협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손잡고 “국가보안법”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그만큼 국가보안법이 주는 폐해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벌써 7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유는 정부수립이후 남쪽의 혼란한 정세를 수습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한시적인 법이었기 때문에 진작 폐지되어야 할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가보안법은 지금까지 살아남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집권자들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는 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살아서 숨 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북 간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금의 상황에서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사회가 ‘냉전’의 시대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감히 냉전의 산물을 걷어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유엔과 국제엠네스티 등에서 폐해를 지적하고 이의 철폐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도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촛불혁명을 이룩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시대의 추세에 맞추어 국가보안법의 개정 및 철폐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평화통일 학교교육과 국가보안법”에 관한 발제와 토론을 통해 국가보안법에 관한 논의가 정리되기를 희망하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17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 종 곁

인 사 말

열린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강민정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평화통일교육과 국가보안법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발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박미자 6.15남측위원회 교육위원장님, 오은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장님, 이성주 경기평화교육센터 교육국장님, 이연희 6.15남측위원회 대변인님, 이시종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차장님, 오민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비대면으로 토론회를 진행해야 하는 조건 속에서도 오늘 토론회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6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중고등학생들이 '미래세대 중고등학생이 외친다!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민주시민이자 미래의 기성세대인 중고등학생들이 70년간 어른들이 없애지 못한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낮은 법인지 고발하고 외치기 위해 나왔다"면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절하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호소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평화통일교육은 평화의식을 바탕으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동반자로 북을 인식하고, 남북의 평화적 관계를 증진하면서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평화통일교육은 통일부의 통일교육지원법과 통일교육지침서를 참고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지침서로 교육을 진행하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습니다. 통일교육지원법 11조에 있는 고발조항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는 통일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으로 인해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가 이상한 자기검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상을 억압하고 생각을 통제하는 반 헌법적 법률인 국가보안법은 우리 아이들을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민주시민으로 길러낼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자체가 일제의 잔재이며 독재정권의 국민 억압 도구였기에 민주사회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시대와는 공존할 수 없는 악법입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는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며 6.15 공동선언.

4.27 판문점선언 등 평화통일을 향한 우리의 노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큰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지난 6월 6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학생은 "촛불을 들어 세상을 바꾼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조국의 모든 모순의 뿌리인 분단체제 종식을 위한 활동에 임할 준비가 돼 있으며 통일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다. 중고생들이 민족의 치유와 통일을 위해 북한의 중고등학생들과 회담을 갖고 교류를 하고 평화적인 행사들을 개최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 국가보안법은 분명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방아쇠를 겨냥 할 것이며 이런 법은 결코 떼뺏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비판을 들으며 저는 우리 학생들이 남북의 평화와 통일에 앞장서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7일
국회의원 강민정

인 사 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정) 서 영 석

안녕하십니까?

경기 부천시(정) 국회의원 국민비타민 서영석입니다.



먼저 ‘평화통일교육과 국가보안법 토론회’ 준비를 위해 힘써주신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와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를 의미 있게 채워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 내 참석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세상이 참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시대의 요구에 따라 국민을 위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법을 개정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채 73년째 변함없이 그대로인 법이 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시대 독립군을 탄압했던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두고 1948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입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7조는 국민의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검열하며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오며 현재의 우리 사회와 무척 괴리가 큼니다.

시대착오적인 낡은 법은 한 개인이 트위터에 리트윗한 특정 게시물로 구속수사를 받게 하였으며, 한 케이블 채널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제작사가 북한군을 긍정적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하는 데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의 경우 더는 공동체 규범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예술 표현과 사상, 양심, 학문의 자유 등에 추상적인 법 적용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7조는 폐지의 필요성이 큰데, 이미 UN에서도 1992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폐지를 권고해왔고, 국내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 폐지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는 대한민국의 기회로 작용하였고,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를 주도해나가는 선도 국가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말씀처럼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고, 우리는 선도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힘을 모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 폐지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전 희 영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민주시민교육을 마음껏 펼치기 위한 참교육 실천투쟁입니다.

빠르게 마무리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그 열의가 뜨거웠습니다. 바로 얼마 전 끝이 났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입법청원 이야기입니다. 열흘도 안 되어 10만 명의 국민동의를 이끌어내었던 국가보안법 폐지의 열기는 지금도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국가보안법 피해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32년 동안 북침설 교사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오셨던 청주의 강성호 선생님도, 북의 아이들이 읽는 책을 정부의 승인 하에 가져왔건만 하루아침에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뒤집어썼던 인천의 선생님들도, 30여 년간 빨갱이 전교조라는 오명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 조합원들도, 국가보안법 때문에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조차 못하는 우리 50만 교사들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조차 가지지 못하는 우리 국민 모두도 국가보안법 피해자입니다. 제대로 된 평화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국가보안법의 저축을 받게 되는 사회, 이것이 대한민국의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민주시민교육을 마음껏 펼치기 위한 참교육 실천투쟁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다양성을 이해하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건강한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교사들이 마음껏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국가보안법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인간의 존엄이 꽃피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으며 누구나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세상을 학생들과 마음껏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요.

국가보안법은 수 십 년째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켜왔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 해결방안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투쟁해서 기필코 2021년을 국가보안법 폐지의 해로 만듭시다.

발제 및 토론

- 발제1 _ 오 은 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장, 교육학 박사
발제2 _ 이 성 주 경기평화교육센터 교육국장

- 토론

○토론1	이 연 희 6.15남측위원회 대변인, (사)겨레하나 사무총장
○토론2	이 시 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차장, 통일인문학 박사
○토론3	오 민 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 변호사

발제문 | 평화통일 학교교육과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이 학교교육을 망치는 일곱 가지

오 은 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장
교육학 박사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한 날에 반갑기도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한 기사가 났다. <중고등학생들,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다>.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장면 장면엔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은 적은 없으며 심지어 정의로운 실천 행동에는 항상 청소년의 순수한 열정과 바람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울적하였다. 그들을 망치고 있는 것을 거둬주지 못하고 기어이 그들이 떨치고 일어날 때까지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국가보안법. ‘인간의 존엄이 꽃피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고’ 싶은, 어처구니 없이 소박하고 원론적인



바람을 막는 국가보안법은 ‘악법(惡法)’ 중에서도 묘사어 말로 ‘찐’이다. 이 ‘찐’ 외침에 대하여 이 토론회와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성과가 대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민동의 청원 달성과 연이어 터진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법안 폐지 여론이 연일 높아지는 가운데, 중고등학생들도 ‘국가보안법 폐지’ 목소리에 힘을 보탤다. 중고등학생 단체인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미래세대 중고등학생들이 외친다!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박근혜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에 참가한 중고등학생들과 지지시민들이 뭉쳐 만든 중고등학생·시민사회 단체다.



▲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중고등학생들이 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준호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현재의 민주시민이자 미래의 기성세대인 중고등학생들이 70년간 어른들이 없애지 못한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낡은 법인지 고발하고 외치기 위해 나왔다”면서 “조국의 미래세대인 중고등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세상을 바꿔내는 정도로 사회가 변화했지만 1948년 만들어진 낡은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그 위세를 떨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인홍(동명생활경영고 2) 양은 “우리 중고생들은 사상을 억압하고 생각을 통제하는 반 헌법적 법률인 국가보안법의 무서움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6년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 지도부에게 당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성 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법무부에 내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성인에 국한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며 “사상과 생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명백한 악법이며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수현(경희여고 2) 양은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을 지적했다. 최 양은 “촛불을 들어 세상을 바꾼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조국의 모든 모순의 뿌리인 분단체제 종식을 위한 활동에 임할 준비가 돼 있으며 통일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다”면서 “중고생들이 민족의 치유와 통일을 위해 북한의 중고등학생들과 회담을 갖고 교류를 하고 평화적인 행사들을 개최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 국가보안법은 분명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방아쇠를 겨냥할 것”이며 “이런 법은 결코 떼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해연 양도 “군부독재의 마지막 잔재인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을 심판하고 이제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 상식적인 흐름”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그는 “인간의 존엄이 꽃피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으며 누구나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자유롭게 꿈꿀 수 있

는 세상이 우리가 꿈꿔왔던 세상”이라며 “우리 중고생들이 앞장서서 구시대의 잔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남북의 평화와 통일의 선두에서 촛불혁명의 마침표를 찍자”고 힘줘 말했다¹⁾

‘미래 세대’가 ‘구세대’ 악법이라고 외친 국가보안법. 이 법이 악법인 이유 중에서도 우리의 근간이 교육을 망치고 있기 때문이다. 발제자는 이 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이 학생들의 인간다운 성장을 방해하고, 교육의 목적성을 훼손하는지 말해보고자 한다.

1. 국가보안법은 인간 존엄성 교육을 망친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으로서 태어나 세상에 살고 있는 모두는 당연하게도 인간존엄성의 원초적인 원리에 의해 삶을 살아가길 기대한다. 계급과 신분이 개인에게 귀속적인 지위를 주던 시절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인류 역사가 발전한 것도 같은 이치일 것이다. 각자가 가진 성향, 사상, 능력, 습관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교사는 가르쳐야 하고, 가르친 그대로 세상은 돌아가야 한다.

1989년 제천시 제원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던 강성호 교사는 임용된 지 3개월을 채우지 못한 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해직되었다. 수업 시간에 북 침설을 주장했다는 사유가 붙은 것이었다. 600 여명의 학생들이 사실무근이라는 탄원서를 내었지만, 당일 결석한 학생 2명을 포함한 6명의 증언을 토대로 그는 파면되었고 10년 4개월 만의 복직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면복권이 이뤄지지 않아 재심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그는 교사양성과정을 충실히 이행해 자격을 갖추고 교사가 된 자였으며, 자신의 수업을 잘 이뤄나가고자 열정을 다했던 신규교사였다. 그런 그에게 국가보안법이 가한 린치는 그 자신의 인생 뿐 아니라 탄원서를 제출했던 600 여 명 학생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어긴 자는 교사도, 인간도 아니다’라는 의식을 심어줬을 것이 분명하다. 강성호 교사는 여러 차례의 인터뷰에서 ‘조작과 사냥’으로 국가보안법의 횡포를 묘사한 바, 조작과 사냥의 목적이 국가보안법에서 딱지를 붙이는 순간 인간이 아닌 사냥감으로 전락하는 광경을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목격하게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이 장면을 정확하게 노리고 작동하는 것은 아닐까. 특히 국가보안법 피해자인 교사들이 근현대 역사와 북녘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언급했다는 점에서 인간다움을

1) <중고등학생들,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다> 민플러스 조혜정 기자 2021.06.06. 20:21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85>

포기하고 싶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될만한 내용은 가르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당시에 그를 '친북교사'라고 증언했던 제자는 재심 재판 출석을 요구하는 친구에게 '그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이처럼 당했다, 그냥 기억 속의 치부로'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²⁾ 사람이 사람을 모함하고, 모함해서 비인간적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언행을 자기검열하며 부당한 인권 침해를 겪는 피해자들에게 철저히 방관하는 법, 이런 장면을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교육이란, 인간 존엄성을 기반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대체로 간첩사건, 조직사건 등으로 비화되며 개인적인 범죄로 처리되더라도 기간의 삶이 풍비박산 나는 것이 보통이다. 피해자의 인간 서사는 사라지고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이라는 라벨이 붙어버린다. 그러한 라벨링 기능을 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 존엄을 훼손하지 않을 방법'은 없다. 4·3, 5·18, 그리고 87년 민주화투쟁에서 자욱한 피비린내를 가능하게 했던 제도적 장치가 국가보안법이고, 그 법의 살육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근원적인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2. 국가보안법은 교육의 가치 지향적 선순환 원리를 망친다

공교육은 체계적인 인간 성장 원리를 작동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시민을 길러내는 장이다. 교육의 체계성을 구체적인 교육계획으로 드러낸 국가문서가 바로 '교육과정'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대체로 타일러 모형으로 대표되는 목표모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목표모형은 교육목표를 우위에 두고 교육과정의 모든 다른 측면을 교육목표달성의 수단으로 보는 교육과정 모형이다. 이 모형은 어떤 교육목표에도 적용될 수 있는 탈가치적인 모형을 지향한다.³⁾ 타일러(1949)는「교육과정과 수업의 기본 원리」라는 저서에서 교육과정과 수업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네 가지의 질문으로 ① 학교가 달성해야 할 교육목표 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경험 ③ 학습경험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방법 ④ 목표 달성의 평가로 단계를 설정하였다.

탈 가치적, 탈 실천적 모형으로서 목표모형은 이미 관련학계에서 여러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이론을 과학이론의 응용이론으로 보는 관점인데, 사실은 공교육 자체가 존재하는 근거로서 '탈가치'란 어불성설이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

2) [단독] '친북교사' 증언 제자, 30년 만에 "선생님께 죄스럽다" 2021.1.29.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5624

3) 김정래(2016). 교육이론 성격 규명을 위한 교육과정의 세 가지 모형 분석: 목표모형, 내용모형, 메타프락시스모형. 교육문화연구 22(4), pp.25-50

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익인간이라는 교육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나아갈 방향이 교육목적이고 교육목적을 구체화하는 것이 교육목표⁴⁾라고 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교육목표일 것이다. 즉, 교육목표는 교육이념의 방법론적 부분집합으로서 기능해야 하므로 가치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 가치적 목표모형으로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은 (때때로 내용 모형의 보완이 있기는 하지만)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이념을 능가하는 권력 작동이 있기 때문이다. 반공법⁵⁾이 군사정변으로 획득한 권력을 유지, 강화하려고 제정되었고 국가보안법으로 흡수 통합되었다는 주지의 사실과 헌법의 가치지향적 원리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상황에서 교육과정이 단독으로 가치지향적인 교육이념을 구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랜 한국 교육의 문제- 우수한 역량은 배출할지 모르나, 문제해결력, 공동체성, 인성을 고루 갖춘 평화 지향의 민주시민을 양성하지 못한다? - 들은 탈가치적인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서부터 이미 노정된 사실일지 모른다. 현재 논쟁중인 '2022개정 교육과정'도 총론에서 교육과정 개발의 핵심 키워드로 '선택과 자율'이라는 탈 가치적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몰 인간적인 지표는 가치 지향으로 불거지는 근원적이고 논쟁적인 교육과정 고민을 회피하려는 제도적 장치로 보인다.

심지어 헌법과 교육공공성 모두를 훼손하는 족벌(금 수저)의 전횡을 조장했다.

국가보안법은 사립학교와 사립 병원, 족벌 언론, 족벌 교회의 전횡을 뒷받침 해주었다. 사립학교 재단 설립자들은 학교를 사유물로 취급하고 학교 재산과 수입을 자기 것으로 빼돌리는 범죄행위를 저질러왔다. 이에 대응해 전교조 교사들과 학부모,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면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냐 하며 반발한다. 국가보안법에 의지해서 사학에 대한 전횡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언론기관이 집권세력이나 특정재벌 및 족벌의 사유물로 전략하게 되는 데도 국가보안법은 기여했다.[국가보안법 철폐해야 하는 10가지 이유⁶⁾]

4) 은승표(2006). 헌법과 교육 그리고 교육이념, 교육법학연구 20(2), pp. 97~122

5)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중심의 군부세력의 첫 번째 '혁명공약'은 '반공을 국시로 삼고 형식에 그쳤던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 한다'였다. 이에 따라 좌익사범 혐의로 2천여 명을 체포하는가 하면 군사정변 후 불과 두 달도 안 된 1961년 7월 3일 반공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반공법 제정 이전에도 이미 국가보안법이 존재했고 1958년에는 이른바 '보안법 파동'을 겪으면서 한층 강화된 조항들이 삽입된 상황이었으므로 또 다른 법률의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 즉 반공법 제정과 공포는 군사정변 세력의 이른바 '혁명공약' 제1호를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크게 작용한 것 이었다. 법률 제643호로 공포된 반공법은 많은 부분 국가보안법과 겹치는 것이었고 국가보안법이 일반적인 반국가행위에 대한 처벌법이라면, 반공법은 그중에서도 공산주의 활동에 관한 처벌법이었다. 즉 반공법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는 1980년 신군부 세력이 주도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반공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국가보안법으로 통합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국가보안법은 역사교육을 망친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특히 근현대역사 교육에 있어서 고난과 항쟁, 정의와 불의에 대한 관점을 배제한 편향 박제된 역사를 가르치게 한다. 일례로 동학농민운동은 대표적인 의미 축소 사례라고 할 수 있다.⁷⁾ 동학농민운동이 동학란이라는 폄하적 평가와 서술에서 벗어나 근대화와 민족주의의 표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87년 민주 항쟁 이후에야 가능했으며 부패하고 무능한 권력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동학운동 당시의 ‘혹세무민(惑世誣民)’ 질타를 역사교육에서 그대로 계승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반복·반공 정서의 직설적 법리로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 역사교육의 사관은 반복·반공적 관점의 제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근혜 정권 시기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⁸⁾’은 역사교육이 국가보안법 프레임에서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반증한 바 있다. 철저한 고증과 해석, 여러 관점의 격론들이 보장되어야 할 역사가 국가보안법이 제안하는 사관에 복종하여 퍼내는 교과서와 교육내용들은 학창시절을 되새겨 본 사람들 이라면 누구나 그 편향성을 술회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학문의 자유와 문학예술 창작의 자유까지 억압했다. 학문은 우리의 지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진실을 추구한다. 그런데 학문적 연구결과를 사법적으로 재단할 경우 사회과학분야에서 진리 추구라는 학문의 존립근거는 없어지고 학문에게는 체제정당화 기능만이 남게 된다. 검찰이 1988년 학술단체협의회 심포지움의 서관모 교수 발제문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려 한 것이나 1994년에 경상대학교 교양교재인 {한국사회의 이해}를 이적성 서적으로 규정해 저자들을 기소한 사건은 학문의 자유 침해의 전형적 실례이다. 조선일보가 김대중 정권에 자문역할을 한 최장집 교수에게까지 ‘마녀사냥’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었던 근거는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고 민주화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조선일보의 안보상업주의를 잠재울 수 없고 제2, 제3의 최장집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문학과 예술의 자유를 억압했다. 해방 이후 한국문학의 기념비적 작품인 소설가 조정래의 {태백산맥}이 국가보안법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6) 장상환(경상대 교수,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 2004.9.11. 인터넷언론 대자보
<http://www.jabo.co.kr/8295>

7) 서인원(2014).동학농민운동의 한국사 교과서 서술내용 분석. 송실사학 제32호

8)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2015년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생긴 논란이다. 고려대학교 역사 계열 학과 교수진 등 2015년 10월 28일 현재 70여개 대학 사학계 교수들이 국정화 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고 각 학교 대학생들은 국정화 반대 대자보 붙이기 운동을 벌이는 등 국정화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그 밖에 정치권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시민단체, 진보단체 등 야권에서는 국정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10월 27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미화 기술이 들어갈 것이 없을 것이며, 만약 들어간다면 대통령 자신부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 먼저 나온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서 우려했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 문제가 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교과서 폐기를 결정하면 서 논란이 종료되었다.

화가 신학철 그림의 초가집이 김일성의 생가와 닮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 선생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레드헌트}라는 영화는 대법원에서 이적 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지만 이 영화 상영을 주도했던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 서준식씨는 구속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작품, 노벨문학상을 받을 만한 작품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보안법은 사회 심리적으로 인간의 창의력을 침해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무의식적인 공포를 조장해왔다. 많은 사회인사, 진보인사들은 자신의 발언과 글이 혹시 국가보안법에 걸려들까 봐 자기검열에 전전긍긍하였다. 이제 한국은 중국 경제의 급속한 추격에 대응하여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고 인문사회과학에서도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이론을 창조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인간의 창의적인 활동을 억압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질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최근에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인기 드라마가 일부 단체들의 국가보안법 피소를 당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을 겪었다¹⁰⁾. 국가보안법이 북을 부정하고 근대의 인류과업과 문명사에 큰 영향을 끼친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 반학문적 태도를 가지고 억압을 하는 이상, 현재와 미래의 의미와 지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역사교육은 이뤄지기 힘들다.

4. 국가보안법은 민주시민교육을 망친다

87년 민주항쟁 이후로 우리 사회는 사회를 움직이는 커다란 힘으로의 민주시민 역량을 삶의 현장에서 목격하였으며 급기야 2016년 촛불항쟁과 그 결과로서의 대통령 탄핵 및 촛불정부 탄생을 목격하면서 ‘민주시민’의 덕목과 양성에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권위주의의 최후방으로 여겨졌던 학교에서도 학교규칙 개정 및 시도별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통해 ‘학생 시민’의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기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그 성숙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그에는 지독한 장벽이 존재한다.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의 저자들¹¹⁾은 메리토크라시¹²⁾ 패러다임에 사로잡힌 입시 중심 교육과 함께 ‘우리 사회의 극심한 이념 대립’을 그 장벽

9) 장상환(경상대 교수,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 2004.9.11. 인터넷언론 대자보
<http://www.jabo.co.kr/8295>

10) <‘사랑의 불시착’,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당해:기독교자유당 ‘북한 미화 선동’ 주장>, 이데일리 2020.1.2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34886625640672&mediaCodeNo=258>

11) 심정보 외(2018).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서울:도서출판 북멘토
 심정보(전 부산교대 교수, 새로운 교육 체제수립을 위한 사회적 교육위원회 상임대표) 이동기(강릉대 평화대학원 교수, 독일 현대사학 전공), 장은주(징검다리교육공동체 민주시민교육센터장), 케르스틴 폴(독일 ‘정치교수법 및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정치교육협회’ 임원)

12) meritocracy: 부, 권력, 명예 등과 같은 사회적 재화를 어딘 사람의 타고난 혈통이나 신분, 계급 같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능력에 따라 사람들에게 할당하자는 이념(장은주 외, 2014)

의 정체로 보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계기수업이나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생각해 보라. 민주시민교육에서 때때로 냉전적인 극한성을 드러내곤 하는 이런 종류의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에둘러 갈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민주시민 교육을 활성화해 보려는 그 어떤 노력도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¹³⁾.

국가보안법은 근거 있고 당당한 주장과 그 후속작업으로서의 토론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데에서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준용하기 어렵다. 2019년 서울의 인현고등학교에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¹⁴⁾. 역사교육행사였고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건기 대회 등이 반일운동을 강요하는 ‘사상독재’라고 주장하는 학생과 그 배경의 극우단체들의 논쟁은 뒤이어 학교폭력, 쌍방고소 등으로 비화되는 현재진행형 사건이다. 이 때 학생회 측은 학교 문제에 대한 외부 단체 개입과 학교 주변 시위 중단을 호소하였다.

10월 25일 오전 인현고 학생들은 학생회 중심으로 대의원대회와 학급자치회의를 진행했고 총 출석 인원 437명 중 393명이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인현고등학교 393명 학생 일동’ 명의로 친구들과 어른들에게 △학교문제에 대한 외부단체의 개입과 학교주변 시위 중단 △학교와 관련된 왜곡된 허위 정보 유포 중단 △학생 간의 이견에 대해서 감정적인 대립을 자제 △학교 내의 문제는 공개토론회 등 학생자치 노력으로 해결하겠다는 등 4가지 내용의 호소문을 배포했다. 인현고 학생회는 오는 29일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31일에는 ‘학생 안전 대책 건’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¹⁵⁾.

교사로서 학생들의 이 호소문은 그 과정과 내용 모든 면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성장으로 비춰졌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문제 제기 학생의 학생회 거부, 학교폭력 조치 사항 거부 등을 내세우며 학교 앞 점거 시위를 하는 과정과 그것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극우 여론화를 부채질하는 양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고 민주시민교육과 건강한 논쟁은 아직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외부단체의 개입 및 폭력적 압박 등도 결국은 ‘학교가 (혁신학

13) 앞의 책, 15~17쪽

14) ‘인현고 사태’는 지난 10월 22일 서울 관악구의 인현고 재학생들이 ‘학생수호연합’(학수연)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교사들의 ‘사상독재 반대’를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학수연 측 학생들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내놓는 의혹과 문제제기를 다시 보수단체·언론이 받아 확산하는 양상이다. 의혹은 다시 꼬리를 물고 새로운 이슈로 번지고 있다. 사태의 당사자들, 학교와 학수연 학생들은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일까.(경향신문 2019.11.9. 정용인기자)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911091030001#csidxb75742afe42d0cca108c77e3fef2285>

15) <인현고 학생들, ‘학내 문제 학생자치로 해결하겠다’>, 교육희망 2019.10.26. 김상정기자
<http://m.news.eduhope.net/21807>

교라서) 빨갱이'라는 덧씌우기에 근거하고 있는 바, 국가보안법의 무소불위(無所不爲) 횡포는 학교 교육의 울타리를 함부로 침범하기 위한 장애를 제거하는 데 작동하고 있다. 한편, 인헌고 학생회가 교원단체 교사들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교사들이 정치기본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치적 중립성' 조항 때문이다.

한국의 헌법 31조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명시한 것은 이런 교사와 학교의 정치적 동원을 막자는 것이지, 교사를 정치적 금치산자로 만들고, 학교에서 정치사회적 사안을 논의의 주제로 삼지 말자는 내용이 아니다. 교육기본법에서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교사가 정한 정당이나 파당의 입장을 교실에서 공공연하게 선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이지, 교사가 정치적 쟁점을 금기시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¹⁶⁾.

정치기본권이 없는 교사가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가? 국가보안법의 자기 검열 및 탄압이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빼놓고 생각해보면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는 질문일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민주시민교육은 '할 수가 없다'. 진심으로 인헌고 학생회가 '침묵의 나선'¹⁷⁾으로 빠지진 않았는지 걱정된다.

현대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시민성은 시민사회의 덕성으로서 근대적 인간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편협하고 이기적인 특수이익으로 경도되는 것을 자제하고 공동의 이익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자발적 의지와 심리적 준비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¹⁸⁾.

세계시민교육까지도 이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의 의지와 포부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불가능해 보인다.

5. 국가보안법은 전인교육을 망친다.

"세월호 참사가 이제 7주기를 맞이하는데 아직까지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제대로 된 해결을 요구하는 유가족 분들이 빨갱이라고 매도당하기도 했고요. 빨갱이라는 말이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는 건 국가보안법

16) 김동춘 칼럼, 인헌고 사태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한겨레 2019.11.19.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17656.html>

17) the theory of spiral of silence(Noelle-Neumann E., 1973) 1970년대 미국에서 의제설정이론이 주목받을 때, 유럽에서는 노엘 노이만의 침묵의 나선이론에 학문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침묵의 나선이란 자신의 의견이 대중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견을 표명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침묵하게 될 때 발생한다. (출처: 서현진, 이수정 (2020). 민주정치와 시민교육. 서울:백산서당)

18) 김경래(2018). 세계시민성 연구방향. 경기도:인간사랑

의 존재 때문인 것 같아요"¹⁹⁾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 세월호 사건의 비극과 진상규명을 위한 간절한 유가족들의 외침이 공공연하게 ‘부정당했다’. 국회의원 후보가 앞장서서 확인되지 않은 궤설을 늘어놓는가 하면 팩트 체크만 해도 드러나는 뉴스들이 특정 세대와 단체들에 통용되고 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인간존엄조차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보안법의 ‘라벨링’ 덕분이다. 채유빈 학생의 말대로 ‘빨갱이’가 전천후 공격수단이 된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 라벨링의 결과이다. 곳곳의 비극이 전하는 슬픔을 공감의 마음으로 모두 함께 애도하고 트라우마가 아닌 성장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건강한 치유의 프로세스는 아주 초반부터 망가지고는 한다.

주디스 허먼(Judith Herman)은 깊은 정신적 외상의 치유단계를 안전의 확보- 기억과 애도-연결의 복구²⁰⁾ 과정으로 설명한다. 식민 시절과 분단, 전쟁까지 겪은 우리 민족에게 이 같은 치유의 기회는 확보되었는가. 외상 사건은 일상적인 삶에의 적응력을 압도한다는 점에서 매우 특수하다.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고통은 반복되며, 주변을 포함한 결과가 좋지 못하다. 트라우마의 압도적인 힘으로부터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외상 사건에 관한 기억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기억을 돌이키고 마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외상생존자는 자신의 현재를 수복할 수 있다²¹⁾. 하지만 제대로 된 기억의 조각(雕刻)을 위해 ‘진상 규명’을 외치는 순간, 대형 인재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순간, 노동자와 학생이 ‘우리는 사람입니다’를 외치는 순간, 치유를 위한 ‘안전’은 사라진다. 또 다르며 어쩌면 더 크게 아파해야 할 상처를 조준하면 국가보안법이 ‘빨갱이’ 딱지를 붙여주기 때문이다.

지덕체의 고른 발달,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사회적 기술과 협응성을 갖추어 전인교육의 목표를 이루기에는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 어쩌면 한라산에서 여수, 순천에서, 노근리에서, 광주에서, 광화문에서, 노근리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던 이들은 안전의 단계를 넘어선 징검다리였을지 모른다. 산목숨의 징검다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걸핏하면 등장하는 국가보안법의 전횡은 기필코 끝나야 한다.

6. 국가보안법은 평화교육을 망친다

평화학 박사 국내1호이기도 한 정주진은 평화란 ‘개인과 집단이 공격이나 위협에 노출되지 않고 각자의 인간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며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정의한다.²²⁾ 그러

19) <세월호 유가족도 매도, 국가보안법 사라져야> 진보대학생넷 동국넷 채유빈회원 인터뷰, 오마이뉴스, 21.4.16. 곽호준 기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6087

20) Herman, J., 최현정 역(2012). 트라우마: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서울:열린책들

21) 박종호(2017). 사적 치유로서의 미술과 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2) 정주진(2019). 정주진의 평화 특강: 가짜뉴스, 난민, 국가폭력, 민족주의, 환경으로 살펴본 평화 이야기. 서울: 철수와 영희

면서 평화의 평면적 해설이나 염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을 추동하는 분석적 정의를 추가한다.

평화는 이론적으로 소극적(negative) 평화와 적극적(positive) 평화로 구분된다. 이 개념은 평화학자인 요한 갈통이 1960년대 말 처음 제시했고 그 후 많은 사람의 연구를 거쳐 다듬어지고 발전했다. 소극적 평화는 인간의 신체에 직접 가해지고 생명의 손실이나 해를 끼치는 물리적 폭력, 다시 말해 직접적 폭력이 사라질 때 성취된다. 사회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인 전쟁도 그런 폭력에 해당한다. 냉전 시대 많은 연구가 무기 감축, 정치적 안정, 집단 안보, 국가 간 협력 등을 통한 전쟁 억제와 소극적 평화 성취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그런 접근은 전쟁 가능성을 제거하지 못한 채 현 상태(status quo)만 유지한다는 비판을 낳았다.

적극적 평화는 구조적 폭력에 초점을 맞춘다. 구조적 폭력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사회 구성원의 자유와 성장, 안전과 행복을 방해하는 사회적 제약과 억압을 의미한다. 이런 폭력은 개인과 집단의 잠재성을 제한하거나 박탈한다. 적극적 평화는 사회 정의 실현과 발전을 통해 구조적 폭력에서 야기된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제거함으로써 성취된다. 간과하지 않아야 할 건 구조적 폭력을 뒷받침하고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 또한 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사상, 철학, 이론, 담론, 상징 등을 매개로 가해지는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강화 또는 유지하고 그 결과 사회적 불평등과 부정의의 지속에 기여한다.²³⁾

국가보안법은 일단 평화의 근원적 정의를 흐드는 장치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데 공격이나 위협이 없는 사회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또한, 이른바 ‘막걸리 법’이라는 별칭이 시사하듯이 ‘까딱 잘못하면 잡혀가고’ ‘한번 잡혀가면 끝장나는’데, 또 안 걸리면 괜찮은 것.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처벌을 받기도 안 받기도 하는 비 일관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불안과 연계되어 있다는 임상적 자료는 검증되었는데, 국민 생활 일반을 장악하고 있는 법의 실태가 이렇다면 벌써 사회적 안전장치로서의 법 기능은 고사하고 국민의 평화를 위협하는 ‘주적’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적극적 평화를 구현하려는 움직임들이 인용된 바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다각적이고 다층적인데 반하여 그에 대응하는 논점들은 대체로 이분법적 경향으로 흘러감으로서 진정한 평화-평화를 평화적인 과정으로 이뤄내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것이다. 성별, 지위, 계층, 직업 등에는 전선(戰線)이 형성되며 특히

23) 출처: <https://peaceconflict.or.kr/362> [평화갈등연구소]

피억압, 소수자의 신분을 ‘비정상’으로 매도하면서 파장이 커질 때 참혹한 범죄적 비극으로 이어지는 광경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고자 할 때 전선이 형성되면 보다 우월한 권력을 가진 편에서 ‘혐오, 배제, 폭력’의 논리를 펼치게 되고 이것은 폭압과 전선의 형태로 드러난다. 젊은 층이 많이 가입한다는 어떤 게시물 사이트에서는 세월호 피해자, 난민, 민주주의 열사, 성소수자 등에 대해 조롱을 일삼고, 그 조롱을 실제로 대상자에게 실행한 후에 인증샷을 남기는 활동(?)을 하기도 한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인간이 아닌 무엇’으로 대상화한 후에 몰 인간적인 대응을 하려고 나설 때 최소한의 인간적인 품위를 잊게 되는 ‘살육과 비명’이 토론의 자리를 메운다는 것이다.

“나는 2012년 이후 여러 차례 국정원과 극우매체들의 ‘종북’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정치인이 ‘종북’이라고 몰리면 반론이고 뭐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회적 정치적 조건에서는 소송이 유일한 대처 방법이었다. 하지만 국정원장에 대한 고소 외에, 극우매체들에 대해 낸 형사고소는 단 한 건도 검찰의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다...(중략)...대신 민사소송은 대부분은 승소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현실에서 바뀌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²⁴⁾”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가 종북 물의를 당했던 자신과 당의 사례를 서술한 책에서 제목처럼 ‘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가 없는 시대의 모습이 우리 사회를 참담하고 벗어나야 할 곳으로 만든다고 지적한다. 혐오표현을 당하는 대상자의 고통과 슬픔도 문제이지만 그 혐오대상자와 함께 구성하고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혐오가 번지게 되면 혐오하는 자조차도 살 수 없는 지옥세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공존의 책임’이라고 정의한 작가는 혐오표현이 한없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점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혐오(표현)의 근본 작동 원리가 전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파생했다고 할 수 있는 학교폭력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서로를 배제하는 방식, 배제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자신의 존엄성과 생명을 놓아버리는 상황, 무자비할수록 각광받는 강자의 폭력,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피해자인데도 놓을 수 없는 수치심 등은 국가보안법이 비호하고 있는 ‘분단폭력’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폭력이 설치하는 데 평화는 있을 수 없으며, 평화교육을 평화적으로 할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

7. 국가보안법은 통일교육을 망친다

24) 이정희(2019). 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 서울:들녘 출판사

국가보안법은 분단의 동반 피해자이자 통일의 당사자인 북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경계하도록 한다.²⁵⁾ 이른 바 북을 대한민국 영토(한반도와 부속 도서)의 일부를 불법으로 점거하는 괴뢰집단으로 규정한 것이다. 괴뢰집단과의 통일? UN 동시 가입을 한 평등한 국격? 북을 대상으로 한 어떤 작업에도 자체 모순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이 법적 정의가 국가보안법에는 ‘명시’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은 그 존재 자체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파괴한다.

[헌법] 전문)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교육기본법] 제17조의6(평화적 통일 지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통일교육을 하려면 통일의 의지와 바탕이 교육목표에 서려 있어야 한다. 통일 노력의 상대 당사자를 괴뢰집단으로 명명하고서 이를 수 있는 통일이 있던가?

한일교류회에 참석했던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2학년 학생이 한일교류회에 참석해서 통역을 맡았다가 경험한 바와 그 소회는 우리 통일교육의 근본적인 걸림돌을 생각하게 한다.

오후에는 역사문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로 독도 문제와 위안부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였는데 일본이 오늘날에도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남조선의 학생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와 비슷한 감정이었다. 지금은 갈라진 우리 민족이지만 그들과 나는 같은 분노, 같은 억울함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뜻밖의 공통점을 찾은 나는 문득 호기심으로 질문을 던졌다.

<< 공화국²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지금 생각하면 나는 그 질문에 어떤 기대를 품고 있었던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대답은 나의 기대와는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었다.

<<‘북한’에 대한 좋은 인상은 하나도 없구..우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선 안 배우거든.>>

기대는 어디까지나 상상이었고 그의 말의 현실이었다. 아무리 공통되는 것이 많아도 분단세월의 후과는 오늘도 뿌리깊이 남아있다. 가슴 아픈 현실이다.

공화국의 동무는 마음속으로 조국통일을 바르는데 남조선의 동무는 통일이라

25)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1. 5. 31.>

26)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일컫는 말

는 말보다도 혐오감이 앞서고 있다²⁷⁾).

아마도 그 ‘남조선 동무’는 한일역사교류에 참석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다운 학생일 터이고, 따라서 조선학생은 평범한 통일교육을 받은 남한 학생을 만나게 된 것이다. 재일조선인으로서 유무형의 차별을 받고 버티며 민족정체성과 우리역사, 말, 글 교육을 받은 ‘남도 북도 아닌’ 학생이 목격한 그 모습이 통일교육의 결과가 응축된 것이다. 과연 통일교육은 이뤄지고 있는가. 국가보안법에서 괴뢰집단으로 명명하고 그에 관한 작은 조각정보도 차단당하며, 그 곳이 사람 사는 곳으로 자체의 내적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만 해도 인간존엄성과 평화를 짓밟히는데, 통일교육이 과연 가능한가. 조선학교 학생의 ‘남조선 동무’에게 조국통일을 염원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현행법에 ‘법교육지원법’이 있다. 청소년 및 일반국민을 민주시민으로 기르기 위해 2008년에 제정된 것이다. 나는 이 법이 명문화(明文化)한 구절 그대로 헌법을 가르치고 싶다. ‘법대로’ 인간존엄교육, 선순환원리의 교육과정, 역사교육, 전인교육,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그리고 통일교육을 해내고 싶다. 한편으로는 ‘나 때에는(라떼)’ 버전으로 시대를 풍미했으나 정의로운 승리로 없어진 ‘국가보안법’을 가르치며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고 싶다.

[법교육지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 교육”이란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27) <다리가 되자!> 김양순 [출처:재일 조선학교 학생들(2021). 꽃송이3: 우리는 통일로 달려갑니다]

이 성 주

경기평화교육센터 교육국장

1. 평화통일교육과 통일교육지원법,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평화통일교육은 평화의식을 바탕으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동반자로 북을 인식하고, 남북의 평화적 관계를 증진하면서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평화통일교육은 통일부의 통일교육지원법과 통일교육지침서(2018년 이후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으로 명칭 변경)를 참고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2018년에 개정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서는 종전과 달리 평화와 평화의식을 핵심 가치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의 내용 중 ‘5. 통일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하여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6.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면서 함께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가야 할 협력의 대상이다.’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전히 북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시각과 안보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7. 북한에 대한 이해는 객관적 사실과 인류 보편적 가치 규범에 기초해야 한다.’²⁾에서는 북을 이해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북의 공식 매체는 선전의 매체라는 특성을 이해하면서 판단해야하고 북한이탈주민이나 방북자들의 북한 경험은 지역적 또는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제약성이 있고, 북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북의 언론과 북한이탈주민, 방북자들의 다양한 모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선 단편적인 지식과 경험보다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인식하라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교육뿐만 아니라 시민 교육 영역에서의 평화통일교육 또한 통일교육지원법과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을 뛰어 넘어 교육을 진행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통일교육지원법 11조에 있는 고발 조항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1) 2018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2) 2018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진행할 때에는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 있는 5, 6, 7번을 지키면서 교육을 해야 합니다. 특히 북에 대한 이중적인 관점, 평화통일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안보의 관점으로 북을 바라보는 5, 6번을 지키면서 진정한 평화통일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북을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남북의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말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북은 언제든지 적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하면서, 동시에 교류 및 협력을 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교육 내용이 여전히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7번 조항에서는 북을 단편적인 모습으로 바라보지 말고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반 시민이 국가보안법을 지키면서 북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북의 주민을 직접 만날 수도 없고, 연구 목적이 아닌 이상 북의 방송과 노동신문은 일반인이 볼 수도 없으며, 북의 서적 또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 매체의 자료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요 매체들은 대부분 북을 악마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매체를 주로 접하는 대한민국 시민들은 북을 객관적인 시각 또는 종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렵고, 단편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2. 시민들의 북에 대한 인식과 국가보안법

경기평화교육센터 교육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저는 2018년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와 연계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평화공감 토크콘서트 ‘통일 특투유’(이하 특투유)>라는 제목으로 시민들을 만나면서 통일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진행했던 교육과 이 사업의 차별점은 기존의 교육에서는 통일에 관심이 많거나 북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한 적이 있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지만, 민주평통을 통해서 진행되는 이 교육 사업에서는 통일에 관심이 많이 없거나 북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접한 적이 없는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투유는 참여자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의 교육입니다. 대표 질문을 통해 참여자들이 통일과 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통일에 대한 걱정 및 두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대화를 통해서 통일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표 질문인 “통일을 나에게 ()이다”라는 질문에는 “희망이다.”, “어렵지만 가야할 길이다”, “평화이다”처럼 긍정적인 대답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단순히 통일의 찬성, 반대를 묻는 질문에는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나오는 편이지만, 통일을 자신의 미래 그리고 자신의 문제로 받아

들이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것보다 희망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을 하면서 많이 놀라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북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투유의 또 다른 대표 질문은 “북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입니다. 이 질문에는 첫 번째 질문과는 반대로 부정적인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핵, 김정은, 독재, 가난, 굶주림, 아사, 범죄, 마약, 자유가 없다” 등의 대답이 많이 나옵니다. 북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형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부분 “TV, 신문과 같은 언론이나 유튜브 같은 매체를 통해 많이 접하게 된 내용이어서 생각이 났다”라고 대답합니다. 남북이 분단된 이래로 76년 동안 다양한 매체에 의해 의도적으로 형성된 북의 악마화 및 부정적 묘사의 영향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하고 있는 북의 모습을 통해 이미지가 바뀐 시민들도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시민들은 북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북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적은 이유를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이유를 망설임 없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북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찾아보면 북의 주민의 삶과 크게 상관이 없는 “백두산, 금강산, 평양냉면” 등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미지가 형성된 이유를 물어보면 “우리나라 산이라서”, “통일되면 가고 싶어서”, “유명한 음식이어서” 등과 같은 표면적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북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단편적인 모습만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적는 것입니다. 물론 백두산, 금강산, 평양냉면도 북의 모습이입지만, 긍정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은 사실입니다. 간혹 북의 사회상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적어낸 시민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으로 말문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북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우리 사회와 비교해서 잘 되어있는 모습을 말하는 점에서는 항상 조심해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서는 북의 모습을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한민국에서는 북에 관한 정보는 편향된 정보를 많이 얻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것부터가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북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또한 끊임없는 자기 검열 속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특투유 교육에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도 국가보안법의 그늘 속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북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시민들이 통일에 대한 막연한 걱정을 토로하는 부분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통일은 나에게 ()이다”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적은 시민들도 “북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적게 되고, 마지막 질문인 “통일 후 걱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범죄가 늘어날 것 같다.”, “사회가

혼란스러울 것 같다”, “가난한 북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내야할 것 같다.” 등 두 번째 질문의 답변에서 드러나는 부정적인 시각이 세 번째 질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범죄율이 높을 것 같고, 통일이 되면 부유한 한국으로 북의 주민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범죄율이 높아질 것 같다는 의견은 북의 이미지가 남북통일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미 형성된 북의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통해 교육을 해야 하는 강사로서는 국가보안법, 특히 7조의 고무, 찬양죄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참여자들이 교육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도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를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이 들은 북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내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이라고 부연 설명을 덧붙여야만 했다는 시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교육에 참여한 참여자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보안법의 테두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즉,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교육을 하는 강사도, 교육에 참여하는 참여자도 자기 검열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현재 통일교육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에 관한 편견과 고정관념들이 쉽게 깨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평화통일 시민교육에서의 국가보안법

76년의 분단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악마화 되고 부정적으로 묘사된 북의 모습에서 벗어나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서 안내하는 대로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통일교육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 고무, 찬양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의해 북의 긍정적인 내용이나 대한민국 사회가 북으로부터 배울 점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강사로서 고발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북은 반국가 단체이기 때문에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의 5, 6번 내용처럼 안보의 대상이자 평화통일의 대상인 것이고, 안보의 대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결국 국가보안법 7조의 고무, 찬양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 또한 이 조항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김련희씨는 국가보안법의 고무, 찬양죄에 의해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김련희씨는 공중파 방송에 나오는 북 이탈주민과는 다른 목소리로 본인이 살다온 조국인 북의 긍정적인 모습들에 대해 대중 강연 및 유튜브를 통해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런 김련희씨를 보면서 한편으론 국가보안법에 의해 고발을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었는데 결국 고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하고 있는 저 또한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교육을 다니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2년에 시작하게 된 평화통일교육은 현재의 경기평화교육센터가 아닌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라는 이름으로 공교육 현장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학생들에게 교육할 내용보다 단체명이 가지는 이미지 때문에 항상 수업 전 교장과의 면담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안을 학교에 미리 보내서 검열당하는 일도 있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교장실에서 교실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그대로 시연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교육 현장에서 학생 및 교사를 만나 평화통일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강사들도 끊임없는 자기 검열 속에서 교안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만든 통일교육의 교안에 쓰이는 참고 자료는 모두 보수 언론에 있는 자료를 인용해야지만 무사히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었고, 참고 동영상의 경우도 보수 언론의 방송 장면을 편집한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수적인 매체에서 쓰이는 자료가 아닌 진보적인 매체에서 쓰는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들어갈 경우 학교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수 언론의 자료에서 그나마 쓸 만한 내용을 추려서 교안의 참고자료로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평화통일교육 시민 강연을 진행할 때도 북의 긍정적인 사회상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항상 부정적인 사회상을 보여주거나 부연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북에 관해 일방적인 찬양을 한다는 의심을 피해야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자기검열 속에서 강연을 진행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두 시간 남짓의 강연을 통해서 이미 고정되어있는 북의 부정적인 생각이 한 번에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평화통일교육을 통해 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도 있다는 것을 전달하며, 북에 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되어서 북의 다양한 모습을 가감 없이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되면 통일교육지원법 및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도 수정이 되어서 더 이상 북을 평화통일의 대상이자 안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교육을 하지 않고, 남과 북이 한반도에서 평화롭게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을 통해 북을 평화통일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 연 희

6.15남측위원회 대변인
(사)겨레하나 사무총장

● 정부주도 평화통일교육 : 분단과 통일문제 인식의 모순

- 정부주도의 통일교육은 학교통일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옴.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반공, 안보교육에서 평화, 통일교육으로의 전환이 시도되었으나 정부의 성격에 따라 부침을 계속함.

- 2018년 통일부의 통일교육지침서가 「평화통일교육 : 방향과 관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화통일교육의 목표로 △평화통일의 실현의지 함양, △건전한 안보의식 제고, △균형 있는 북한관 확립, △평화의식 함양,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제시한 것은 이전의 반공, 안보교육과 비교할 때 진일보 한 것.

- 그러나 안보의식 제고와 평화의식 함양은 서로 상충되며, 북한이 “경계”의 대상이면서 “협력”의 대상이라는 것도 모순임.

- 무엇보다 ‘균형 있는 북한관’을 가지기 위한 북한에 대한 이해는 “객관적 사실과 인류 보편적 가치규범에 기초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현행 국가보안법 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향성만 제시된 것에 불과함.

- 국가보안법의 존재 자체가 그렇듯, 정부주도의 평화통일교육에서도 안보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 등에서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 시민사회 평화통일교육의 제한성과 국가보안법

-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학교통일교육은 공모나 위탁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와의 거버



년스 없이는 불가능함. 그런데 통일교육지원법의 ‘고발조항’을 포함, 학교 현장의 보수성이 강하게 작용하여 정부 이외에 통일교육의 다양한 주체들이 성장하기 힘든 조건. 국가보안법 이전에 정부의 주도성과 통일교육지침이 가이드라인으로 존재함.

- 일반 시민 통일교육의 경우, 시민사회단체 역량과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출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임.

- 오랜 기간 정부 주도로 이뤄진 반공, 안보교육으로 인해 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종편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아니면 말고 식’의 악의적인 정보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음. 국가보안법 체제 아래 형성된 사회적 의식으로 인해 북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되지만 북에 대해 균형 있는 시각을 제시하거나, 행여 좋게 말하거나 편드는 것이라고 낙인 될 수 있는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음.

-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이 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제한성이 클 뿐 아니라 일종의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임. 북과 관련한 정보의 취득과 연구, 해석과 선전 등 모든 영역은 국가보안법, 특히 7조에 위배될 수 있으며, 언론환경도 취약하여 보수언론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 따라서 자체 검열을 강화하는 식으로 활동의 폭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이 같은 상황에서 통일교육의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와 공론의 장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흡수, 반영하는 등의 선순환 과정을 만들기는 쉽지 않음.

- 4.27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공동선언들의 이행과 현 정부 통일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평화, 통일교육과 시민사회 역량강화는 필수적임.

-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통해 정부 통일정책이 지닌 모순을 해소하며, 민간 교육주체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함.

● 평화통일의식 고양,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 : 국가보안법 폐지부터

-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2008년까지, 시민단체들의 방북이 빈번해지고, 200만에 가까운 우리 국민이 금강산을 방문했으며, 개성공단에서 남북협력이 일상화됨. 일례로

2005년 거래하나 진행한 ‘광복 60돌 기념 평양문화유적참관 및 아리랑 공연’ 관람 사업은 총 17회에 걸쳐 약 4,000여명의 우리 국민이 참여한 사업임. 반공교육, 보수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만 알고 있던 북이 아니라 현실의 북을 느끼고 배우는 체험의 장, 현장교육의 장이 되었음.

- 통계를 보더라도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간 교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북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음. 이처럼 남북의 교류와 만남은 어떤 통일교육보다 실효적인 교육의 장이 되어 왔음.

- 2000년대 남북교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임의적, 제한적으로 진행되었음. 향후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많은 국민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함. 그 중 국가보안법은 북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함.

- 최근 공개된 조선노동당 개정 당 규약에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은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남북이 서로를 인정한 데 기초해 합의한 통일의 원칙, 방안에 부합하는 것. 남측도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 남북 화해협력, 공존공영으로 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 시 종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차장
통일인문학 박사

1. 1948년 12월 국가보안법 제정과 조선일보의 사설 <국가보안법을 배격함>

- 국가보안법은 1948년 9월 제정된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의 대항 법안으로 만들어진 것.
 - 1948년 여순사건을 계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권수호와 국토방위, 국헌문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 제정을 기초하였다. 이후 국회 내에서 국가보안법 제정을 둘러싸고 찬,반의 치열한 논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국회에 상정된 국가보안법은 광범하게 정치범 내지 사상범을 만들어 낼 법안인 점에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중략) 북조선의 소련점령 지역 내의 정권이 대한민국의 존위와 발전을 훼손한다고 하나 일반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함.
- 이러한 법의 제정은 “대한민국의 전도를 위하여서나 우리 국민의 정치적, 사상적 교양과 그 자주적 훈련을 위하여 크게 우려할 악법이 될 것을 국회 諸公에게 경고하고자 한다.” 조선일보 1948년 11월 14일자 사설

2. 2021년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비교검토

1) 북에 대한 규정

- 국가보안법 자체에서는 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나, 법 제정 당시의 취지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북과 연관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시 적용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이남지역과 이북지역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규정 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의 왕래, 접촉, 교역, 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과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 법률의 목적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로 규정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남한과 북한과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 북에 대해 국가보안법은 법조문에 ‘북’이라는 표현이 없으나, 동 법을 통해 사람들을 기소하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본다면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고, 남·북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민족내부의 거래로 보는 등 국가보안법의 적용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음.

2)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나타나는 법 집행의 문제

- 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통신 등) 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 2 제1항에 따른 신고(방문증명서)를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3. 동일한 행위에 대한 국가보안법(10년)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300만원)의 차이

- 국가보안법은 법 어디에도 “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받은 절대다수가 북과 관계있다는 근거로 처벌받았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간의 관계를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행위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이나 남북교류 법 중 어느 것으로 집행을

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양형의 차이가 발생함과 동시에 신체적 고통이 따름.

- 자의적 해석을 통한 법 집행이 지난 70여 년간 진행되어 왔고, 이에 대한 피해사례도 무수히 많이 있음.

4. 국가보안법을 만든 국회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국가보안법 운용에 신중을 기하라 (동아일보, 1948년 12월 3일 사설)
“ 우리 3천만 국민이 이 법에 대해 위구(危懼)를 품게 되는 것은 혹시 이 법을 남용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 국가보안법은 일반 형법을 통해서도 처벌 할 수 있는 법이라고, 국가보안법 제정 당시부터 언론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밝힌바 있다.
- 국가보안법이라는 굴레에 갇혀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것도 매우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왜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 폐지나 개정이 되지 않고 이어져 왔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정치권이 왜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에 나서지 않고, 언론은 왜 침묵을 하는지,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
- 부당한 권력에 항거하여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들의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세력의 입장은 무엇인지도 정확히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법안과 폐지와 유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입장을 논의한 후, 이 문제에 대해 국회가 분명한 입장을 정리, 처리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토론문3 | 국가보안법과 평화통일교육- 교육에서의 변화,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오 민 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
변호사

두 분의 발제문을 보면서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에서의 국가보안법, 평화통일문제를 고민해 오신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평화통일교육에 대하여 고민하는 분들 또한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해야만 하는 현실, 국가, 정부가 해야 할 고민이고 교육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과 시민사회의 몫으로 되어있는 현실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씩씩하였습니다.



교육이 중요하고,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은 토론회를 준비하고 발제해주신 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주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여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교육과정에서 헌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무엇이고 왜 보장되어야 하는지,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노동조합은 나와는 동떨어진 일이라는 인식, 노동조합에 대해 그동안 사회에서 형성된 왜곡된 이미지와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배웠는지, 평화통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있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면,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헌법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하여 평화적 통일이 국가와 국민의 사명임을 전제하고 있고,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하여 평화적 통일이 국가의 책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하여 대통령의 의무에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가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제72조

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이 통일을 지향하고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국민의 위임을 받아 선출된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며, 대통령에게 위임된 권한일지라도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은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헌법 각 조항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에 따라 국민 개개인은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인지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교육과정에서부터 존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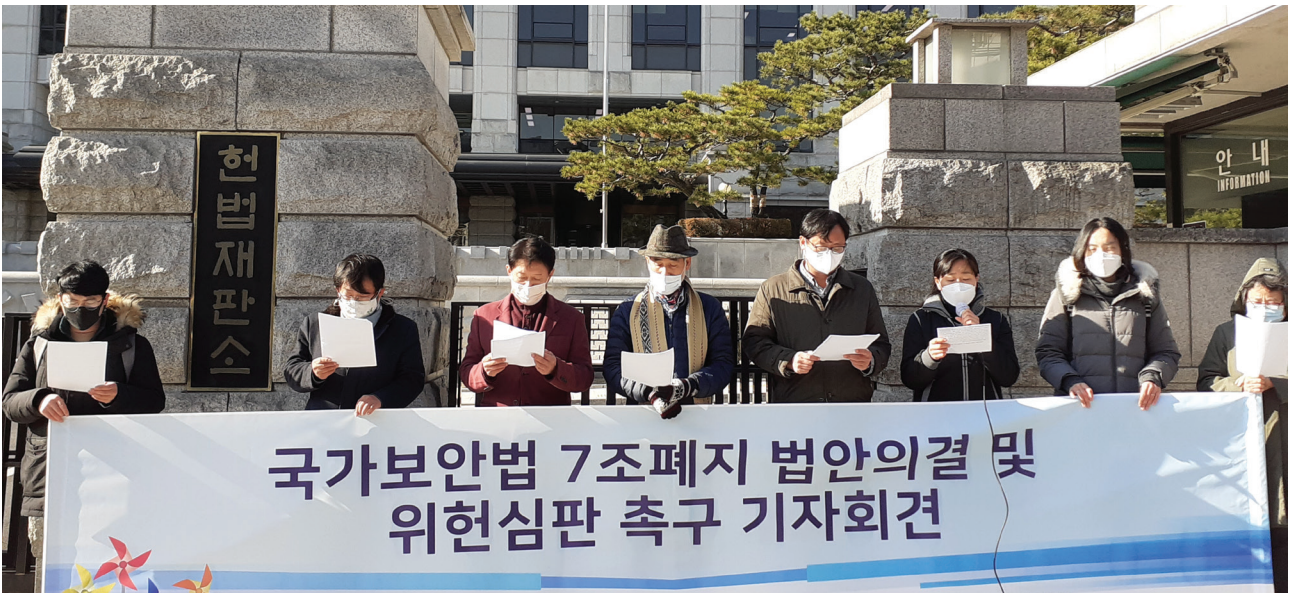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화와 통일이 무엇인지, 평화통일이 무엇이고 왜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그 이전에 이런 고민을 해야 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개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노력은 곧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가 되는 현실에서 이를 개인에게 맡겨두는 것은 사실상 그런 고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에 수차례 이루어진 합의는 남북이 상호 대화와 협력의 대상임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몫이 됩니다.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상대방으로, 통일의 동등한 주체로 인식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러한 인식과 판단 또한 개인의 몫이 되고 맙니다.

교육과정에서, 교육의 현장에서 헌법에 대한 교육, 평화통일에 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국가보안법의 존재가 이러한 교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발제자분들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 정하고 있는 찬양·고무행위가 되고, 남북교류 과정에서 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상호 교환하여 소지한 행위가 이적표현물 소지행위가 되는 현실에서 온전히 평화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법이 제정되면서 사라졌어야 할 한시법이었던 국가보안법은 70년 넘게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고, 북한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 기초한 왜곡된 시선 내지는 무관심이 용인되도록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검열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반대의견이기는 하나, 일찍이 “평화적 통일은 남북한이 무력을 배제하고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의 합의를 통하여 통일을 이루는 방법밖에 생각할 수 없고 그러자면 우선 남한과 북한이 적대관계를 청산하여 화해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상대방을 무

조건 헐뜯을 것이 아니라 잘한 일에는 칭찬도 하고 옳은 일에는 동조도 하여야 하며, 상호교류도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남·북한의 주민이 서로 상대방의 실정을 정확히 알고서 형성된 여론의 바탕에서 통일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어디까지나 북한이 불법집단 내지 반국가단체로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결정 중 변정수 재판관 반대의견). 위 반대의견에 평화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평화통일을 어떻게 가로막고 있는지 모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교육현장에서의 평화통일교육, 무엇이 선후가 아니라 이 모두가 충족될 때 국민이 평화통일의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